

체육시설 이용약관

1차 개정 : 2020. 7.

2차 개정 : 2024. 3.

3차 개정 : 2024. 5. 28.

4차 개정 : 2024. 12. 11.

5차 개정 : 2025. 1. 6.

6차 개정 : 2025. 9. 12.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체육시설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육시설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②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④ ‘등록일’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회원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리를 말한다.
- ⑤ ‘개시일’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⑥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등록기간 또는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에 게시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 ② 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체육시설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수강료
3. 약관내용
4. 소지품 보관시 유의사항 등
5.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체육시설은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① 일반회원 : 일반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체육시설 홈페이지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② 일일회원 : 일일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며, 안전요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현물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체육시설 내의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체육시설의 약관에 동의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회원 자격을 심의하여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정신질환 등 심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 ② 전염성 질병이 걸린 경우
-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 ④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⑤ 강습질서문란, 배타적 회원화합, 다른 회원들로부터 금전 및 금품 각출행위로 인하여 이용 회원 간 또는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⑥ 강사 또는 직원 등 센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 ⑦ 회원 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⑧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 ⑨ 이용자가 일일입장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⑩ 회원 간 자리선점 및 자리 다툼의 원인행위를 한 회원
- ⑪ 체육시설 내 이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10조(회원증 제시)

- ① 회원증은 체육시설 내 시설 이용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②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체육시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시에는 체육시설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증은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양도/양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회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집)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 1. 기존회원 : 전월 15일 ~ 전월 21일(21시)
 - 2. 신규회원 : 전월 22일 ~ 말일(선착순 마감)
 - 가. 광진구민(우선) : 전월 22일~24일
 - 나. 타 구민 포함 : 전월 25일~말일
 - ※광진구민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5.09.12.>

- 1. 광진구민 신규등록 첫 날(매월 22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 평일 운영일로 연기
- 2. 타 구민 포함 신규등록 첫 날(매월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 온라인 접수만 진행
- 3. 그 외 명절 포함 공휴일 등의 문제로 등록 기간이 매우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접수 기간 임시 변경 운영
- ③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에서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1인 1강좌 제한: 수영강좌에 한하여 1인 1강좌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1. 수영강좌는 수영장 내 정규강좌를 의미하며, 일일입장(자유수영)은 제외한다.
 - 2. 수영강좌와 타 강좌의 복수 등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12조(회원가입 신청)

- ① 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수칙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개정 2025.09.12.>
- ② 신청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신청시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변경) <삭제 2024.12.11.>

제14조(수강료의 연기 및 환불)

- ① <삭제 2024.12.11.>
- ② <삭제 2024.12.11.>
- ③ <삭제 2024.12.11.>
- ④ <삭제 2024.12.11.>
- ⑤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신청일까지의 강습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총 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한다.
 1. 개시일 이전 :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2. 개시일 이후 : 총 수강료 - (총 수강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총 수강료10%)
- ⑥ <삭제 2024.12.11.>

제15조(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

- ① 체육시설 이용 회원에 한하여 사물함 사용이 가능하며 보증금 및 사용료는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사물함 보증금 : 10,000원
 2. 사물함 월사용료
 - 월사용료 : 소형사물함 3,000원 / 대형사물함 4,000원 / 골프사물함 5,000원
- ② 사물함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키분실요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1(수강료)

1. 수강료는 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수강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 ① 체육시설의 결함, 안전관리 미비 등 시설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회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
- ② 사고로 발생한 회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시설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 시 또는 회원이 사고 방지가 가능했던 경우, 체육시설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③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12.>

제17조(소지품의 보관)

- ① 회원은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은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③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체육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 상법 제153조에 따라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5.09.12.>
- ⑤ <삭제 2025.09.12.>

제18조(삭제)

제19조(시설운영 및 휴관)

-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 :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중곡문화체육센터 : 첫째, 셋째 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③ 체육시설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④ 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체육시설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 ⑤ 시설 운영 및 휴관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육시설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25.09.12.>

부칙(2012.11.16.)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2020.07.01.)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2024.03.28.)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2024.05.28.)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2024.12.11.)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2025. 1. 6.)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칙(2025. 9. 12.)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앞면)

수 강 신 청 서

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강 좌 명		수 강 료	할인 후 결제 금액	
할인 항목 (증빙자료 제출 필수)	50%	30%	20%	5%
	☐ 다자녀(광진구민) ☐ 장애인 본인 ☐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자 ☐ 국가유공자 (배우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병역명문가	☐ 만 65세 이상	☐ 자원봉사 활동자 (광진구청장 발급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친환경 마일리지 가입자(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가입 증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1.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건강정보
- 서비스 이용 정보, 결제 정보(카드사/계좌 정보 등)

2. 수집·이용 목적

- 회원 식별 및 관리
- 프로그램 예약 및 이용 안내
- 서비스 관련 고지 및 민원 처리

3. 보유·이용 기간

- 회원 탈퇴 시 또는 수집 목적 달성 시까지
-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음

4. 동의 거부 권리 및 안내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가입 및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시 설 명) 귀하

[회 원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시설 및 기자재를 훼손하지 않으며,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 변상하겠습니다.
2. 공단의 규정을 지키고 회원증 양도·대여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분실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4. 강좌 수강에 지장이 있는 질병 또는 전염병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환 불 규 정]

1. 모든 회원은 시설 이용 시 회원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회원카드 최초 발급 1회 무료, 분실 시 재발급 비용 1,000원)
2. 공단의 귀책 사유 및 인원 미달로 폐강 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3.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 신청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예시) 개시일 이후 : 총 수강료 - (총 수강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총 수강료10%)

4. 환불 신청은 온라인/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환불금은 약 2주 이내에 작성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인원 미달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회 원 건 강 문 진 표]

	뇌졸중 (중풍)	심장병 (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기 타
진 단							
약물치료							

1. 위 사항 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여부 (☐ 있음 ☐ 없음) [병명: _____]
2. 최근 6개월 이내 수술 또는 입원 병력 여부 (☐ 있음 ☐ 없음) [병명: _____]
3. 현재 건강상 특이 사항 (☐ 있음 ☐ 없음) [병명: _____]

※ 강좌 등록 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만65세 이상) 회원의 경우 개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를 등록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변 경 신 청 서

성 명			회원번호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휴 대 폰	- -
프 로 그 램	변경전				
	변경후				
※ 차액 발생시 산출내역 :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변 경 사 유					

[환불 · 변경 · 연기 규정]

1. 모든 회원님들은 회원카드(신규등록시 1회 무상)를 지참해야 하며, 분실시 발급 비용 1,000원을 납부하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2. 센터의 귀책사유 및 인원미달로 폐강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리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①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예시) 수강료 100% 환불
- ② 개강일 이후> 환불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예시) 개시일 이후 : 총 수강료 - (총 수강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총 수강료10%)
3. 환불 신청은 방문/팩스접수 가능하며, 환불금은 약2주 이내에 작성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① 방문 접수 > 회원 본인(대리신청시 회원증,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 ② 팩스 접수 > 홈페이지 → 환불안내 → 환불신청서 다운/작성 후 팩스 전송
- ③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 등록된 강좌내역 중 환불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강좌환불신청서현황에서 환불접수 및 진행 여부 확인
4. 반변경은 개강 후 1주일 이내 미마감 강좌에 한하여 1회 가능하며, 회원 본인(대리 신청시 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카드 지참)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수업진도가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하거나 1주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변경이 불가하며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인원미달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수영 / 헬스 강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특화강좌 연기불가 (예시)소규모강좌 : 소그룹
7. 강좌연기는 증빙서류(소견서, 진단서, 출장명령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재연기시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수증 / 처방전 불가
8. 강좌연기는 1개월씩 2회까지만 가능하며, 연기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강습이 시작됩니다.
9. 강좌연기 후 반변경은 불가하며,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강좌연기는 매월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상기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 진 구 시 설 관 리 공 단
○○○○ 업 장 명

접수자 :

환 불 신 청 서

※ 굵은 칸만 작성

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강 작 명					
환불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
환불사유	☐ 강사 불만 (사유:)		☐ 강습 프로그램 불만 (사유:)		
	☐ 시설 불만 (사유:)		☐ 직원 서비스 미흡 (사유:)		
	☐ 개인 사정		☐ 기타 ()		
수강기간		결제방법		수강횟수	이용횟수() / 총 수업횟수()
환불금액	결제 수강료	이용료		위약금	환불금액

[환불 규정]

1. 공단의 귀책 사유 및 인원 미달로 폐강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2.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 신청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예시) 개시일 이후 : 총 수강료 - (총 수강료 ×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총 수강료10%)

3. 환불 신청은 방문·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회원 본인이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대리 신청 시 회원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수강내역 → 내 수강내역(재등록, 환불)
→ 강좌명 클릭 → 하단의 환불신청 → 환불요청정보 및 취소 사유 작성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시 설 명) 귀하

- 830 -

사 물 함 신 청 서

※ 굵은 칸만 작성

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수강 강좌명	사물함 위치	사물함 크기
	☐ 내부 ☐ 외부	☐ 소형 ☐ 대형

보 증 금	사 용 료	사물함 번호
10,000원 (현금)	☐ 소형 3,000원 ☐ 대형 5,000원	

[사물함 사용 및 환불 규정]

1. 사물함 사용료는 선납입니다.
 2. 사물함 보증금 10,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합니다.
 3. 사물함은 강좌 수강 회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배정하며, 월단위로 접수합니다.
 4. 임대기간 종료(또는 강좌의 종료/환불) 후 보증금 10,000원을 환불해드립니다.
 5. 사물함 중도 환불 신청 시 사용일수 (일일금액 소형 100원, 대형 167원)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6. 사물함 환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 중으로 처리되고, 연체일수에 대해 사용료가 부과되며, 보증금은 부과된 사용료를 공제한 차액이 지급되오니 임대기간 종료 후 꼭 연장 또는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종료 후 연체 60일이 경과되면 보증금 10,000원은 소멸됩니다.
7. 환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환불금은 약 2주 이내에 작성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방문 신청: 회원 본인이 방문하여 「사물함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대리 신청 시 회원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8. 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종료 처리 및 사물함 내의 물품은 별도 보관합니다. 별도 보관한 물품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반환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사전 안내 후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9. 사물함 내의 보관물의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습기있는 물품의 보관으로 인해 악취 또는 곰팡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물함 장기연체로 임의처분 된 보관물품을
규정에 따라 복지기관 기증 또는 폐기 처분합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본인은 개인사물함을 사용함에 있어 상기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시 설 명) 귀하

사 물 함 환 불 신 청 서

※ 짧은 칸만 작성

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사물함 위치	사물함 크기	사물함 번호
☐ 내부 ☐ 외부	☐ 소형 ☐ 대형	
환불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

사용기간	이용일수	() 일 / 30일
환불금액	보증금	사용료
		최초 결제 수단

[사물함 사용 및 환불 규정]

1. 사물함 사용료는 선납입니다.
2. 사물함 보증금 10,000원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합니다.
3. 사물함은 강좌 수강 회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배정하며, 월단위로 접수합니다.
4. 임대기간 종료(또는 강좌의 종료/환불) 후 보증금 10,000원을 환불해드립니다.
5. 사물함 중도 환불 신청 시 사용일수 (일일금액 소형 100원, 대형 167원)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6. 사물함 환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 중으로 처리되고, 연체일수에 대해 사용료가 부과되며, 보증금은 부과된 사용료를 공제한 차액이 지급되오니 임대기간 종료 후 꼭 연장 또는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 연체 60일이 경과되면 보증금 10,000원은 소멸됩니다.

7. 환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환불금은 약 2주 이내에 작성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방문 신청: 회원 본인이 방문하여 「사물함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대리 신청 시 회원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8. 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하여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종료 처리 및 사물함 내의 물품은 별도 보관합니다. 별도 보관한 물품을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반환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사전 안내 후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9. 사물함 내의 보관물의 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습기있는 물품의 보관으로 인해 악취 또는 곰팡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시 설 명) 귀하

[별지 제7호]

분 실 물 관 리 대 장

관리 번호	신 고 / 접 수							반환 또는 제출 월일	인 수			기타 처리 (폐기, 기증)	담당자 (확인자)
	접수 일시	품명	물품 내역 (모양, 규격, 특징)	수량 (개)	습 득 자		인 수 자		분실자에게 반환	경찰서에 제출			
					습 득 일 시 장 소	성명				성명	성명 (연락처)		

분 실 물 관 리 대 장

1. 관리번호	
2. 습득일시	
3. 습득장소	
4. 품 명	
5. 물품내역	
6. 수 량	
7. 습 득 자	
8. 인 수 자	
9. 비 고	

[별지 제9호]

분 실 물 공 고

관리번호	습득일시	습득장소	품명	물품내역 (모양, 규격 등)	수량(개)	비고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시설명) 이용수칙 확인 및 동의서

■ (시설명) 이용안내

1. 이용자는 (시설명) 이용 시 종목·강좌별 특성, 신체활동 접촉, 운동기구(채, 공 등), 기후(비, 눈, 기온 변화) 등에 따라 신체적 상해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2. 이용자는 이러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3. 본 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점검, 위험 표지 설치, 안전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4. 본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본 면책 동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이용수칙

1. 이용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 내규」 및 본 시설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감염병이 있거나 음주한 상태에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개인의 질병, 부상 이력, 현재 컨디션 등 운동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강사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4. 시설 안에 취사도구 등 화기류 반입은 금지하며, 시설 내 취식행위, 음주 및 흡연을 금합니다.
5. 음식물(음료 포함)은 시설 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음식물 반입으로 인한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3회 이상 반복 시 「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면책동의 사항

1.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상, 물적 피해, 인명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2. 단, 시설의 결함, 안전관리 미비 등 시설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본 면책 동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시설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용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 시 또는 이용자가 사고 방지가 가능했던 경우, 시설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를 충분히 읽고 전부 이해 하였으며,
시설관리 담당자의 안내를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 밑줄 친 부분을 자필로 기재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주) 파란색 표시부분은 각 사업장에 맞게 수정 후 고객에게 배포